

◇개정이유

현행법은 회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상 벌금형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제6조제3항).

나.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제53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금융위원회 소관) 정 종 섭

●법률 제1344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심”을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다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재산으로 대부업자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는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증명 서류를 시·도지사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등”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자자”를 “주주 또는 출자자”로 하며, 같은 항 제4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제3조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을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를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 제3항에”를 “시·도지사등은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제3항”을 “대부업자등이 제4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1항 및 제6항”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제3조제5항”을 “제3조제6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를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제1호의”로,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는”을 “절차 등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제6항”을 “제3조제7항”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본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4조의 제목 “(등록의 제한)”을 “(임원 등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년”를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제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들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9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5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제6호”를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9조의6제2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다.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⑧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을 “시·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으로, “감독상”을 “시정명령 등 감독상”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업소별로 다음”을 “다음”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⑧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등록취소”를 “등록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를 “영업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제6호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을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2호의”를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시·도지사에게”를 “시·도지사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3. 직원의 면직 요구

⑦ 금융위원회는 퇴임·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제1호 중 “제3조제5항”을 “제3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대부업자

-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

2. 대주주

-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이의신청) ①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를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부업자등과”를 각각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로 하고,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되, 각 시·도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단서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등은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즉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8조의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협회는 제1항에”를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8 전단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제19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제5조의2제4항”을 “제5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제21조제1항제8호 중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를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조제6항”을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한다.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별표의 제목 중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제3조제6항”을 “제3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4조를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

별표 제4호 중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별표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의2.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제17호의2를 제1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7호의2 및 제1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의2.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내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17의4. 제9조의7을 위반하여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18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20의2. 제1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제21호 중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등 광고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광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부업등의 등록업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등에 관한 모든 서류 및 그 밖의 자료 등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갱신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자의 해당 등록갱신 신청은 금융위원회에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등록요건 및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초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고용되어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 등의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업자등의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 중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분쟁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등록 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면서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대부업자의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 개선(제3조, 제3조의5 신설)

-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로서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등록·감독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2) 대부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요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을 하는 자가 아닐 것 등을 추가함.

나. 임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제4조)

해당 법인이나 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또는 대주주의 결격사유를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에 해당될 경우 그 직을 잃도록 함.

다. 유사상호의 사용 금지(제5조의2제4항 신설)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라. 대부업자 등의 방송광고 시간 제한(제9조제5항 신설)

대부업자 등이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시간을 규정함.

마.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등 내부통제제도 마련(제9조의7 신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정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감사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보호감시인의 요건을 5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함으로써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건전 경영을 위한 자율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바.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제도 및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 도입(제10조 및 제14조의2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대부업자와 대주주 간의 불건전 거래행위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사.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11조의4 신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아. 협회의 주 사무소 소재지 자율화(제18조의2제3항)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개정하여 협회가 자율적으로 본회(本會) 사무실을 두도록 함.

<법제처 제공>